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7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7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2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7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안)----- 2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8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8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4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8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 9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45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2009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체조사결과 구획정리지구(가정동 도시재생지구, 당하지구 및 검단2지구)와의 중복도근점으로 확인되어 지적법시행령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63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09. 7.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가정동 도시재생지구(37점), 당하지구 및 검단2지구(26점)
 - 측량연월일 : 1993년 6월 16일, 1995년 9월 1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일련번호	도근점 번호	명 칭	계양좌표		비 고
			X	Y	
1	1	지적도근점	-3301.30	-2621.24	가정동 도시재생지구
2	2	지적도근점	-3294.02	-2803.74	
3	3	지적도근점	-3280.07	-3102.66	
4	4	지적도근점	-3265.13	-3318.09	
5	9	지적도근점	-3354.17	-3258.60	
6	310	지적도근점	-3392.21	-3085.60	
7	312	지적도근점	-3636.16	-3241.16	
8	313	지적도근점	-3334.83	-3483.78	
9	315	지적도근점	-3406.85	-3596.00	
10	316	지적도근점	-3344.38	-3386.95	
11	371	지적도근점	-3137.00	-3106.92	
12	372	지적도근점	-2944.95	-3241.92	
13	373	지적도근점	-2871.86	-3248.58	
14	374	지적도근점	-2878.40	-3322.72	
15	375	지적도근점	-2862.43	-3110.77	
16	376	지적도근점	-2807.62	-3253.28	
17	377	지적도근점	-2802.93	-3194.70	
18	378	지적도근점	-2797.85	-3115.28	
19	379	지적도근점	-2752.36	-3118.48	
20	380	지적도근점	-2757.82	-3197.73	
21	381	지적도근점	-2763.37	-3256.69	
22	382	지적도근점	-2768.48	-3333.19	
23	383	지적도근점	-2774.43	-3407.14	
24	384	지적도근점	-2649.39	-3416.22	
25	385	지적도근점	-1953.43	-3368.64	
26	386	지적도근점	-2647.33	-3342.42	
27	468	지적도근점	-3152.10	-4005.65	
28	471	지적도근점	-3180.99	-3478.11	
29	472	지적도근점	-7348.14	-2727.65	
30	473	지적도근점	-3189.12	-3263.11	
31	474	지적도근점	-3194.00	-3151.52	
32	475	지적도근점	-3199.62	-3102.20	

일련번호	도근점 번호	명 칭	계양좌표		비 고
			X	Y	
33	476	지적도근점	-3205.97	-2994.96	가정동 도시재생지구
34	477	지적도근점	-3201.52	-2946.44	
35	478	지적도근점	-3215.18	-2803.57	
36	479	지적도근점	-7385.17	-2689.74	
37	480	지적도근점	-7414.92	-2657.82	
38	955	지적도근점	5652.39	-6836.19	당하지구 및 검단2지구
39	956	지적도근점	5879.11	-6417.62	
40	957	지적도근점	5758.60	-6151.79	
41	958	지적도근점	5668.95	-5786.49	
42	959	지적도근점	5619.46	-5619.94	
43	960	지적도근점	5584.85	-5480.98	
44	961	지적도근점	5550.17	-5328.37	
45	962	지적도근점	5507.23	-5157.63	
46	963	지적도근점	5453.98	-5023.32	
47	964	지적도근점	5347.85	-4847.48	
48	965	지적도근점	5284.16	-4751.79	
49	966	지적도근점	5235.27	-4664.85	
50	967	지적도근점	5114.46	-4506.08	
51	968	지적도근점	5025.44	-4270.29	
52	969	지적도근점	4911.44	-4159.61	
53	970	지적도근점	4776.51	-3993.53	
54	971	지적도근점	4710.72	-3874.22	
55	972	지적도근점	3082.08	-3474.44	
56	973	지적도근점	3241.85	-3432.33	
57	974	지적도근점	3371.13	-3375.44	
58	975	지적도근점	3527.40	-3424.18	
59	976	지적도근점	3715.02	-3466.56	
60	977	지적도근점	3872.87	-3515.85	
61	978	지적도근점	4016.72	-3576.97	
62	979	지적도근점	4245.38	-3640.77	
63	980	지적도근점	4479.45	-3679.4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 - 46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 확정된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훈 국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354,523,869,880	324,313,696,810	30,210,173,070
결산액	세 입	363,473,617,074	337,236,330,488	26,237,286,586
	세 출	265,011,706,496	251,322,309,792	13,689,396,704
계		98,461,910,578	85,914,020,696	12,547,889,882
잉여금	명시이월	31,586,628,730	31,421,254,020	165,374,710
	사고이월	14,063,084,970	14,063,084,970	-
	계속비이월	4,209,478,220	1,085,000,000	3,124,478,220
	보조금사용잔액	5,265,230,131	5,212,732,231	52,497,900
	순세계잉여금	43,337,488,527	34,131,949,475	9,205,539,052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보고서 내용

1.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내부거래	계
자산 총계	1,226,123,330,935	69,998,800,453	11,749,782,710	-	1,307,871,914,098
부채 총계	43,766,771,005	52,497,900	-	-	43,819,268,905
순자산 총계	1,182,356,559,930	69,946,302,553	11,749,782,710	-	1,264,052,645,193

2.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내부거래	계
수익 총계	272,090,671,556	14,108,669,844	2,941,194,365	(4,836,152,240)	284,304,383,525
비용 총계	209,955,821,594	7,263,356,825	267,604,537	(4,836,152,240)	212,650,630,716
운영차액	62,134,849,962	6,845,313,019	2,673,589,828	-	71,653,752,80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22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84-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의방법 :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 보상계약 체결 장소
 - 장 소 :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560-4480)
 - 구비서류 : 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3. 공고기간 : 2009. 07. 22 ~ 2009. 08. 04(14일간)

4. 공시송달 내역

일련 번호	동	모 지번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등기부상 주소)	
1	신현	229	229-2	전	79	79 (1/6)	박한녀	인천 서구 원창동 83	

5. 기타사항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조 6항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22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의방법 :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 보상계약 체결 장소
 - 장 소 :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560-4480)
 - 구비서류 : 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3. 공고기간 : 2009. 07. 22 ~ 2009. 08. 04(14일간)

4. 공시송달 내역

일련 번호	동	모 지번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등기부상 주소)	
1	석남		223-197	도로	25		지일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에이동609호	

5. 기타사항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조 6항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72호

제4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공모 공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예술성은 물론 환경친화적 건축으로 건축문화 발전과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제4회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명 칭 : 제4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2. 주 최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공모 대상 및 시상
 - 가. 공모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한 건축물에 한하며, 공모일 이전 5년 이내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 나. 선정 범위는 주거건축물(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과 일반건축물을 분리하여 각 최우수 1작, 우수 1작으로 함.
 - 다. 시상 대상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로 하며,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는 상장수여 및 표지판(대상건축물) 설치와 모든 참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 라. 수상작 선정은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함
4. 신청인 : 위 공모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
5. 신청 및 접수 : 2009. 08. 20 (09:00) ~ 09. 30 (18:00)

6. 제출서류

가. 공모신청서 1부(공모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검단출장소, 서구 관내 각 동사무소, 인천건축사협회 사무실에 비치)

나. 기본 설계도서 1부(건축개요, 건물전경사진, 배치도, 평면도 및 입면도)

다. 작품설명서 1부(규격 및 매수 제한 없음)

7. 제출기관 및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본관동 3층)

8. 수상작 선정 : 2009. 10월 하순(수상작 개별통지, 11월 시상 예정)

9. 신청자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음

나. 공모일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032-560-472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번호	제	호
------	---	---

제4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공모신청서

제4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작 품 개 요 ◆

작 품 명			신청분야	주거 / 일반
건 축 주		대지위치		
설 계 자		사무소명		
시 공 자		회 사 명		
건 축 내 용				
건축허가일	(제 호)		사용승인일	
규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용 도	
사용 재료	외장재 및 기타		주요구조재	
			주요지붕재	
특기사항(본 작품설계 및 시공에 반영된 특기사항)				

200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7. 22. ~ 2009. 8. 06.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차 량 번 호	위 반 장 소	과태료 금 액	발 송 일 (반 송 일)	반 송 사 유
(주) 선명전기공사	인천 남구 주안동 25-26 (주)선명전기공사	인천30무3927	서곶근린공원 공영주차장	107,400	2009.07.09 2009.07.15	이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명호 (032)560-4314]

2009. 7.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 - 874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 0 9 . 7 . 2 3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3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L=142.0m, B=6.0m
5. 열람기간 : **2009. 7. 23. ~ 2009. 8. 0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5)
7. 의견서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가좌동 129-5, 가좌동 산51-10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면적 (㎡)	보상금액	소유자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1	가좌동	129-5	토지	132	47,747,000	박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129동1303호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2	“	산51-10	토지	109	45,453,000	조인근	부평구 갈산동 645-47 대동아파트202동1702호	
3	석남동	328-7	토지	2	1,939,000	조명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8-156	석남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4	원창동	85-2	토지	528	562,584,000	전용진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5-1현대아파트105-1404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	신현동	229-2	토지	79 (1/6)	16,912,580	박한녀 (사망)	인천 서구 원창동 83	
6	석남동	223-197	토지	25	8,300,000	지일기 (사망)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2-801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 - 87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 7 . 23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84-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L=122.0m, B=10.0m
5. 열람기간 : 2009. 7. 23. ~ 2009. 8. 0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5)
7. 의견서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원창동 85-2, 신현동 229-2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면적 (㎡)	보상금액	소유자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1	가좌동	129-5	토지	132	47,747,000	박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129동1303호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2	“	산51-10	토지	109	45,453,000	조인근	부평구 갈산동 645-47 대동아파트202동1702호	
3	석남동	328-7	토지	2	1,939,000	조명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8-156	석남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4	원창동	85-2	토지	528	562,584,000	전용진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5-1현대아파트105-1404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	신현동	229-2	토지	79 (1/6)	16,912,580	박한녀 (사망)	인천 서구 원창동 83	
6	석남동	223-197	토지	25	8,300,000	지일기 (사망)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2-801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 - 87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 7 . 23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7-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L=151.0m, B=9.0m
5. 열람기간 : **2009. 7. 23. ~ 2009. 8. 0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5)
7. 의견서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석남동 328-7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면적 (㎡)	보상금액	소유자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1	가좌동	129-5	토지	132	47,747,000	박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129동1303호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2	“	산51-10	토지	109	45,453,000	조인근	부평구 갈산동 645-47 대동아파트202동1702호	
3	석남동	328-7	토지	2	1,939,000	조명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8-156	석남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4	원창동	85-2	토지	528	562,584,000	전용진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5-1현대아파트105-1404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	신현동	229-2	토지	79 (1/6)	16,912,580	박한녀 (사망)	인천 서구 원창동 83	
6	석남동	223-197	토지	25	8,300,000	지일기 (사망)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2-801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 - 87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 0 9 . 7 . 2 3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84-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L=199.1m, B=6.5m
5. 열람기간 : **2009. 7. 23. ~ 2009. 8. 0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5)
7. 의견서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석남동 223-197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면적 (㎡)	보상금액	소유자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1	가좌동	129-5	토지	132	47,747,000	박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129동1303호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2	“	산51-10	토지	109	45,453,000	조인근	부평구 갈산동 645-47 대동아파트202동1702호	
3	석남동	328-7	토지	2	1,939,000	조명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8-156	석남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4	원창동	85-2	토지	528	562,584,000	전용진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5-1현대아파트105-1404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	신현동	229-2	토지	79 (1/6)	16,912,580	박한녀 (사망)	인천 서구 원창동 83	
6	석남동	223-197	토지	25	8,300,000	지일기 (사망)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2-801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7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009년 제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07.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자 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09. 07. 23. ~ 2009. 08. 06.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560-5902~4)
6. 열람대상자 :

연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사업자 제시액
1	(주)청룡목재	서구 오류동	410-12	숙소 등 33건	-

7. 의견서 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560-59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8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9호(2009.02.23)】** (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07. 24(금) ~ 2009. 08. 05(수)

2. 감리자 지정 접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8. 06(목) (09:30~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직접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접수시간 절대 엄수할 것.**

※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3.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8. 06(목) 14:00부터 추첨 진행함.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 예정가격 추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0” 으로 처리하며, 개찰중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접수자와 동일인이 추첨참가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접수자와 다른 사람이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추첨참가자는 입찰참가자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 추첨후 참여결과에 따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사실확인 서류제출 요망.

4.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09. 08. 07(금) ~ 08. 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08. 07(금) ~ 2009. 08. 13(목). (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1호서식]
나. 자기평가표 [별지2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이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9호)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라. **지역가점** : **500세대 미만**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본 공고는 600세대로 해당없음)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7.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
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 업체 추가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함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9(2009.02.23.)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
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
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⑤ 만약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8. 사업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응모번호 제 2009 - 1호

<p>가. 사업주체 : 이토건설(주) 대표 김시춘 (☎ 032-433-9500) 이토씨앤디(주) 대표 김시춘</p> <p>나.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대표 이봉희 (☎032-891-8111)</p> <p>다. 시공자 : (주)금호산업 대표 이연구 (☎ 02-6303-0114)</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 대지면적 : 47,891㎡ ○ 연 면 적 : 128,720.9022㎡ ○ 규 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 10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600세대 ○ 공사기간 : 2009.10.15 ~ 2011.11.14(2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07.01 ○ 착공예정일 : 2009.10. <p>마.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270,009,990천원 ○ 대 지 비 : 115,352,192천원 ○ 총공사비 : 101,637,945천원(타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2.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 86,531,762천원 ○ 전 기 공 사 비 : 6,084,310천원 ○ 소 방 공 사 비 : 4,802,874천원 ○ 정보통신공사비 : 4,218,999천원 	<p>바. 복수예비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공사비 : 86,531,762,000원 ○감리예가기준 : 2,402,294,777원 (건축공사비의 2.7762% 적용) 감리최저예비가격 : 2,258,161,059원 감리최고예비가격 : 2,392,673,946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258,161,059원 ② 2,267,765,123원 ③ 2,277,387,147원 ④ 2,286,976,316원 ⑤ 2,296,587,769원 ⑥ 2,306,215,766원 ⑦ 2,315,835,456원 ⑧ 2,325,412,689원 ⑨ 2,335,461,348원 ⑩ 2,344,367,891원 ⑪ 2,354,212,135원 ⑫ 2,363,814,698원 ⑬ 2,383,157,982원 ⑭ 2,383,032,835원 ⑮ 2,392,673,946원
--	---

9. 공정계획서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배치기간
전체공정 (25개월)																												2009.10.15 ~ 2011.11.14
건축공사 (25개월)																												2009.10.15 ~ 2011.11.14
토목공사 (24.5개월)																												2009.11.01 ~ 2011.11.14
설비공사 (19.5개월)																												2010.04.01 ~ 2011.11.14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81.7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51.47%**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후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감리비입찰서 및 감리회사명 등을” 명기 할 것
- (4) 감리원 배치계획서
- (5) 증빙자료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1년간 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할 것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4호 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2)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미제출 시 입찰 선정 제외하고 실격처리 함**

(4)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해당자)

(5) 업무중첩도 관련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6)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7) 교체빈도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0)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1)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2)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3)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4)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5)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1) 본 공고문 붙임의 **분야별 평가방법 및 [별첨 2], [별첨 3], [별첨 4]**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서류 중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를 1건이라도 미 제출할 경우 실격처리 함.**
(해당사항에 한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 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요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여 제출된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 “가 및 나”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가 및 나”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 실격
- 본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같은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및 **입찰 금액이 아라비아숫자 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입찰일 이후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제외한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응모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에 의하여 2일간 반환(이후 폐기)**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해당분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며, 다만 1명만 부분 배치 가능함
-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상기 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④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합니다.

아.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 전체가 완료 되기전(준공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파.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9호 (2009.02.23)]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거.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6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됨.

너.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불가)

다. 위 항목들에도 불구하고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신규감리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

고, [별첨 2, 3, 4]양식에 따라 감리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2, 3, 4]양식에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러.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종료후 2일간 반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 합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르며, 오타, 기재오류 등으로 공고 내용과 국토해양부 고시내용이 다른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합니다.
- 버. 관련규정 및 공고문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1부
 -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각1부
 - 3. 제출서류 양식 1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사업명 :)

2009. 08. .

(회사명 기재)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해당없음)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p>※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5			예) 100(억원)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1.5			예) 00(%)	
	신규감리원배치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1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예) 감리사	
		기타설비	2			예) 감리사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예) 00(년)	
		기타설비	6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감 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W)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 x 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p>※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p> <p>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9 년 월 일</p> <p>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210mm x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용역명		감리전문회사	평가일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표자		시공사	
감리비		연락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종		공사금액	
총세대수			감리자 지정통보일		
사용검사일			감리계약체결일		

구분		평가항목	평정	
			만족	불만족
감리자		1) 조직상태		
		2)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3)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4) 근무성실도		
		5) 기술능력		
		6) 감리원 통솔능력		
	분야별감리원	7) 근무성실도		
		8) 기술능력		
		9)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10) 근무성실도			
	11) 기술능력			

총평 : 만족(), 불만족()

○

○

※ 11개 항목중 7항목이상 만족인 경우 만족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 여부를 우선 기재한 후, 총평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약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분야별 평가방법(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소계	5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0점 이내		
(1)재무상태 건 실 도	7			
산출근거		- 유동비율 평가(유동자산/유동부채 기재) (산출식 기재)		
		- 자본비율 평가(자기자본/총자산 기재) (산출식 기재)		
(2)감리업무 수행실적	15			
산출근거		역원 - 별첨2 참조		
(3)행정제재	10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산출근거		- 건설기술실적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 =		
(5)신규감리원 배 치	5			
산출근거		별첨4 참조		
(6)교체빈도	5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7)감리업무 수행계획서	5			
산출근거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8)가점 소계	(4)			
8-1.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산	(1)			
산출근거		- 만족비율 : 만족건수/전년도 전체평정건수 ×100 =		
8-2.지역가점	(2)			
산출근거				
8-3.설계용역 수행가산	(1)			
산출근거				
(9)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9-1.감 리 원 배치계획	적부			
산출근거				
9-2.업무중첩 도	적부			
산출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1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경력 및 실 적	15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 자격가점	(0.2)			
산출근거				
(4) 행정제재 감 점	(-2)			
산출근거				
(5) 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나-2. 분야별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4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 감리원 각8점(24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기타설비 : 등급		
(2) 경력 및 실 적	18			
산출근거	6	- 건축 : 일(년) 별첨3 참조		
	6	- 토목 : 일(년) 별첨3 참조		
	6	- 기타설비: 일(년) 별첨3 참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3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기타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 점	(-1) ×3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기타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5)교체빈도	(-0.5) ×3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기타설비 :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1)등 급	2				
산출근거		등급 :			
(2)경력 및 실 적	3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행정제재 감 점	(-1)				
산출근거		업무정지 등 기간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4)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건) , 비상주 (건)			

나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교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9(2009.02.2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연번	용역수행				적용 요율(%)	환산금액
	용역명	감리기간	착공일	금액	공사종류 별 요율	
합 계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8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03.23)】**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07. 24(금) ~ 2009. 08. 05(수)
2. 감리자 지정 접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8. 06(목) (09:30~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 직접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시간 엄수
 - ※ 위임받은 자가 접수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8. 06(목), 건축추첨 후 전기추첨(건축은 14:00부터)
 - ※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 ※ 예정가격추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0”으로 처리하며, 개찰중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 접수자와 동일인이 추첨참가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접수자와 다른 사람이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예정가격 추첨참가자는 입찰참가자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 추첨후 참여결과에 따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사실확인 서류제출 요망.

4.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 기 간 : 2009.08.07(금) ~ 08.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08. 07(목) ~ 2009. 08. 13(목) (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나. 자기평가서[별지 제 7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 **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이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사업내용

가.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응모번호 제 2009 - 1 호

<p>가. 사업주체 : 이토건설(주) 대표 김시춘 (☎ 032-433-9500) 이토씨앤디(주) 대표 김시춘</p> <p>나.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대표 이봉희 (☎032-891-8111)</p> <p>다. 시공자 : (주)금호산업 대표 이연구 (☎ 02-6303-0114)</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 대지면적 : 47,891㎡ ○ 연면적 : 128,720.9022㎡ ○ 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 10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600세대 ○ 공사기간 : 2009.10.15 ~ 2011.11.14(25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10.04.01 ~ 2011.11.14 ○ 사업계획승인일 : 2009.07.01 ○ 착공예정일 : 2009.10. <p>마.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270,009,990천원 ○ 대지비 : 115,352,192천원 ○ 총공사비 : 101,637,945천원(타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2. 감리대상 전기 공사비 : 6,084,310천원 ○ 건축공사비 : 86,531,762천원 ○ 소방공사비 : 4,802,874천원 ○ 정보통신공사비 : 4,218,999천원 	<p>바. 복수예비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범위 : 감리대가의97±3% <p>감리최저예비가격 : 398,091,568원 감리최고예비가격 : 421,813,892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98,091,568원 ② 399,797,367원 ③ 401,465,985원 ④ 403,187,561원 ⑤ 404,832,123원 ⑥ 406,587,461원 ⑦ 408,274,193원 ⑧ 409,921,482원 ⑨ 411,682,895원 ⑩ 413,315,783원 ⑪ 415,045,178원 ⑫ 416,756,938원 ⑬ 418,434,447원 ⑭ 420,142,113원 ⑮ 421,813,892원
--	---

나.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공정 (25개월)																													배치기간 2009.10.15 - 2011.11.14
전기공사 (19.5개월)																													2010.04.01 - 2011.11.14

7.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51.5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5.21%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감리원배치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평 가	비평가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1인	배치대상 아님	-	1인

※ 보조감리원 평가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2인만 평가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의거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제외 함)

9. 응 모 서 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감리비입찰서- 신청서 제출시에 입찰서도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이중봉투에 봉인 후 실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아래 전기분야 표기, 대상사업 명, 감리회사명 표기

아 래

분야	접수번호
전기	

3)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I.총괄표 + II.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5).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6).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리 청 홈페이지 게재한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서약서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㉔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㉕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㉖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㉗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㉘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합산
- ㉙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시]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되는 경우 : 실격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는 상기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요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2009.3.23)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업체 추가서류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마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바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1.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동일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 표기 금액이 다른 경우 포함)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와 서류접수 등록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사용인감계 제출 시에는 제외)
- 마.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2. 기타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마. 8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 가점 가산(1.5)을 합니다.
-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 일부터 1년간 5점을 감점함.
- 사. 감리비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이중봉투로 밀봉하고, 접합부에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상호를 기재한다.
- 아.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 타.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파.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거.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0
점 수		3	2.7	2.4	2.1	1.8	
평가기준		수행계획		부 적 합			-
		배치계획		부 적 합			-
쪽 수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0
점 수		2	1.8	1.6	1.4	1.2	
평가기준		문 제 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부 적 합			-
		쪽 수		3쪽 내외	2쪽 미만	-	

-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 3.23))에 따릅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건축지적과: 032)560-473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신청

(사업명 :)

2009년 월 일

(주) 000000000000000000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이토건설(주) 이토씨앤디(주)	대표자	김시춘 김시춘	
사업계획 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대지면적	47,891.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아파트 600세대 및 부대시설	128,720.9022m ²	2009.10	2011.11
설계업자	대표자	이봉희	상 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60-42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 송)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			
보조(비평가)	-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p>■ 첨부서류</p> <p>1. 자기평가서 1부.</p> <p>2. 감리비 입찰서 1부.</p> <p>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p> <p>■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p>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 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 · 교체 빈도 ·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p>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 회전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총매출액 (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 세부평가방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공고문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점	평가
1. 참여감리원		50			
가.책 임 감리원	(1) 등급	[25] (-) (-0.5)			
	(2) 경력 및 실적	(25)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 별첨1		
나.보 조 감리원	(1)등급	[14] (-) (-0.5)			
	(2)경 력 및 실적	(14)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 별첨1		
다.비상주 감리원	(1)등급	[11] (2)			
	(2)경 력 및 실적	(9)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별첨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 실 적	-	(10)			
	산출근거		○ 연면적 : m ² ※ 산출근거-별첨2		
3. 신용도		[10]			
가. 임찰 참가 제한 · 영업 정지	(1) 감리 업체	(4)			
	(2) 참여 감리원	(3)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나. 재정 상태 건실도	(1) 자본 비율	(1.0)			
	(2) 유동 비율	(2.0)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 실적	-	(4)			
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	(4)			
다. 교육 실적	-	(2)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 감리원	-	(6)			
나. 비상주 감리원	-	(4)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 감리 업체	-	(2.5)			
나. 참여 감리원	-	(2.5)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 행계획	-	(3)			
나. 작업 기법	-	(2)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기법 :		

8. 가점 및 감점		[2.5] [-5]			
가. 가점	(1) 지역	(1.5)			
	(2) 책임감리원	(1)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산출근거		○ 부실벌점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용역명	감리 기간	공사 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호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착오, 오기)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 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정원동결기조를 고려하고, 우리 구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 과 신설 (조례안 10조, 규칙안 9조 및 별표 2)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분장사무 조정 (조례안 6조, 규칙안 별표 2)

- 기록관 운영사무 신설(민원봉사과)
-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나. 정원조례 및 규칙 주요개정사항

○ 총정원 : 778명 ⇒ 778명(총 정원 변동 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조례안 별표 3)

- 일반직(증3) : 행정(+1), 시설(+1), 통신(+1)
- 기능직(△3) : 운전(△1), 조무(△2)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규칙안 별표)

《일반직》 689명 ⇒ 692명 (증3)

- 5급(+1) : 46 → 47 (행정·보건·의료기술+1, 행정·공업·농업·전산
△1, 행정·공업·농업+1)
- 6급(+11) : 140 → 151 (행정+7, 시설+2, 공업+1, 간호+1, 행정·시
설+1, 행정·공업·시설△1)
- 7급(-) : 211 → 211 (행정△7, 시설△2, 세무+2, 사회복지+4,
간호+1, 의료기술+1, 통신+1)
- 8급(-) : 212 → 212 (세무△2, 간호△2, 의료기술△1, 환경·공업
△1, 보건+4, 환경+1, 녹지+1)
- 9급(△9) : 74 → 65 (사회복지△4, 보건△5, 환경△1, 녹지△
1, 행정+1, 시설+1)

《기능직》 86명 ⇒ 83명 (△3)

- 10급(△3) : 21 → 18 (운전△1, 조무△2)

○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규칙안 별표)

- 본 청 : 486명 ⇒ 492명 (+6명)
- 보건소 : 42명 ⇒ 43명 (+1명)

- 보건지소 : 18명 ⇒ 16명 (△2명)
- 출 장 소 : 44명 ⇒ 39명 (△5명)

※ 추가소요 인건비 : 247,078천원 (내역 별첨)

다. 사무위임조례 주요개정사항

- 사무위임조례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사항중
 - 지역경제과 위임사무중 기업지원 관련 사무 삭제
 - 녹지경관과 위임사무중 공원·녹지 관련 사무 삭제

3. 개정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3,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기록관 운영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총무국)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소장) ①보건소·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보건소장은 구청장외,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6조(총무국) ②----- -----.</p> <p>1. ~ 79. (현행과 같음)</p> <p>80. 기록관 운영</p> <p>제10조(소장) ①----- -----.</p> <p>②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p> <p>③----- ----- -----.</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9조 중 “보건행정과와 검단보건지소” 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관관리담당” 을 “광고물관리담당”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건소) <u>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8조(보건소) <u>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9조(사무분장) 보건소에 두는 <u>보건행정과와 검단보건지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u></p>	<p>제9조(사무분장) -----<u>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u> -----.</p>
<p>제12조(동장의 직급)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검암경서동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가좌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검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12조(동장의 직급) -----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u>----- ----- ----- ----- -----.</p>

[별표 2]

보건소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복무관리 3.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회계·지출 관리 4. 차량관리 및 청사관리 5. 비품 및 소모품관리 6. 일반환자 및 한방진료 7.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8.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9. 인체감염 및 전파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 10. 방역약품 및 기재관리 11. 위생·해충 방제사업 12. 의료법에 의한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3.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 및 지도·감독 15.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16. 전염병 예방접종 지도계몽 및 교육 17. 전염병예방에 의한 법정 전염병 검사 및 환자 관리 18. X-RAY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성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관리 20.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21. 의료시혜등 1차 진료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2.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지시되는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각종 질환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24. 노인 건강관리, 모자보건등 각종 건강 진단에 따른 이화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 25. 기타 방역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6.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보건통계 2. 모자보건사업 추진 3. 가족계획사업 추진(저출산 고령화 대책) 4.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5. 학교보건·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6.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7.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영유아 관리 8. 영유아 예방접종(B.C.G, D.P.T 플리오) 9.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0. 결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강보건사업 관련사항 12.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4.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안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16.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만성질환에 관한 사항 18.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1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검단보건지소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소내외 복무관리 3.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일반환자진료 및 만성질환자 관리 7. 각종 보건통계 8. 모자보건사업 추진 9. 학교보건·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10.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1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12. 금연, 영양, 운동등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15.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77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2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7	21	2	6	1	17
6급 이하 계	639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83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총 계		778	492	18	43	16	39	170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2	438	12	40	16	34	152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7	21	2	5	1	1	17
지방행정사무관		28	12	2				14
지방시설사무관		3	3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약무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51	114	3	7	3	7	17

지방행정주사	77	59	3			1	14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3	11				2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환경주사	4	4					
지방공업주사	3	3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약무주사	1			1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사회복지주사	4	4					
지방통신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2					2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7급 소계	211	138	3	10	5	15	40
지방행정주사보	81	44	3			2	32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32	28				4	
지방보건주사보	10	5		3	1	1	
지방환경주사보	6	6					
지방공업주사보	9	9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간호주사보	5			4	1		
지방통신주사보	3	3					
지방세무주사보	27	22				5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12					7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2					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8급 소계	212	130	2	16	6	10	48
지방행정서기	88	50	2	1			3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3	3					
지방시설서기	31	26				5	
지방보건서기	16	10		4		2	
지방환경서기	11	11					
지방공업서기	6	6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간호서기	8			5	3		
지방통신서기	2	2					
지방세무서기	11	8				3	
지방사회복지서기	18	6					12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서기	3			2	1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1	2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9급 소계	65	31	1	1	1	1	30
지방행정서기보	39	15	1				23
지방시설서기보	8	8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세무서기보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8			1			7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2	0			0	0
6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기능직 계	83	51	6	3		5	18
6급 소계	4	4	0	0	0	0	0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조무원	1	1					
7급 소계	25	14	4	0	0	1	6
지방교환원	1	1					
지방기계원	2	2					

지방운전원	10	2	1			1	6
지방사무원	4	2	2				
지방조무원	8	7	1				
8급 소계	14	10	1	0	0	2	1
지방통신원	1	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5	3				1	1
지방사무원	2	1	1				
지방조무원	3	3					
9급 소계	22	15	1	1	0	1	4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12	6	1	1			4
지방조무원	9	8				1	
10급 소계	18	8		2	0	1	7
지방운전원	6			1			5
지방조무원	12	8		1		1	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지역경제과란 제1호부터 10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3 녹지경관과란 제2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지역 경제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라.(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공장이전의 확인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기준공장폐쇄 확인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	공장설립대장 관리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녹지 경관과	2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마.(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			<삭제>	<삭제>	<삭제>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 음의 권한(도시자연공원 시설 구역, 묘지공원 및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녹지 제외) 가.~마.(생 략)	(생 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247,078,180							
1. 인건비	228,945,220							
가. 기본급	170,642,400	○ 구청장(연봉제)	75,303,000					
		○ 부구청장(연봉제)	64,803,000					
		○ 4급(연봉제)	62,045,000					
		○ 5급(24호봉)	2,812,000	1		12	33,744,000	
		○ 6급(19호봉)	2,252,000	11		12	297,264,000	
		○ 7급(12호봉)	1,715,600			12		
		○ 8급(7호봉)	1,273,500			12		
		○ 9급(5호봉)	1,028,900	-9		12	-111,121,200	
		○ 기능6급(20호봉)	2,290,800			12		
		○ 기능7급(18호봉)	1,990,300			12		
		○ 기능8급(18호봉)	1,786,100			12		
		○ 기능9급(17호봉)	1,581,100			12		
		○ 기능10급(15호봉)	1,367,900	-3		12	-49,244,400	
나. 상여금	12,798,180	○ 정근수당	170,642,400		0.08	2	12,798,180	90%평균
다. 정액수당	45,504,640							
1)가족수당	0	○ 배우자	40,000		0.78	12		
		○ 존비속	20,000		1.48	12		
2)자녀학비수당	0	○ 중학교	54,000		0.19	4		
		○ 고등학교	450,000		0.15	4		
3)정근수당가산금	0	○ 25년 이상	130,000			12		
		○ 20년~25년미만	110,000			12		
		○ 15년~20년미만	80,000			12		
		○ 10년~15년미만	60,000			12		
		○ 5년~10년미만	50,000			12		
4) 정액급식비	0	○ 일반직	130,000			12		
5) 교통보조비	0	○ 교통보조비	140,000			12		
6) 명절휴가비	17,064,240	○ 명절휴가	170,642,400		0.05	2	17,064,240	
7) 가계지원비	28,440,400	○ 가계지원	170,642,400		0.17		28,440,400	
2. 물건비	8,70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0	○ 4급	350,000			12		
		○ 5급	100,000			12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 6급	50,000			12	
나. 직급보조비	8,700,000	○ 4급	400,000			12	
		○ 5급	250,000	1		12	3,000,000
		○ 6급	155,000	11		12	20,460,000
		○ 7급	140,000			12	
		○ 8급	105,000			12	
		○ 9급	105,000	-9		12	-11,340,000
		○ 기능6급	155,000			12	
		○ 기능7급	140,000			12	
		○ 기능8급	105,000			12	
		○ 기능9급	105,000			12	
		○ 기능10급	95,000	-3		12	-3,420,000
3. 이전경비	9,432,960						
가. 성과상여급	9,432,960	○ 5급	2,581,400	1	0.80	1	2,065,120
		○ 6급	2,210,900	11	0.80	1	19,455,920
		○ 7급	1,862,700		0.80	1	
		○ 8급	1,537,000		0.80	1	
		○ 9급	1,289,900	-9	0.80	1	-9,287,280
		○ 기능6급	2,210,900		0.80	1	
		○ 기능7급	1,862,700		0.80	1	
		○ 기능8급	1,537,000		0.80	1	
		○ 기능9급	1,289,900		0.80	1	
		○ 기능10급	1,167,000	-3	0.80	1	-2,800,800

- 주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급, 정근수당가산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88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884(2009. 07. 24)호로 공고한바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공사비 기준요율 산정으로 인해 복수예비가격]이 있음을 정정공고 하오니 입찰에 응모하시는 감리자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내용은 기 공고 내용과 동일함을 공고합니다.

2009. 07.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정 사유 및 내용

- 기 공고한 내용중 “8.사업내용” 중 “바. 복수예비가격” 의 공사비 기준요율 착오로 인해 기준요율 및 복수예비가격(15개)을 정정함.

■ 기타내용

- 정정된 내용 【 “8.사업내용” (4페이지)】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타 내용은 공고된 공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884(2009. 07. 24)호】 과 변동된 내용은 없음.

붙임 변경내용 “8.사업내용” 1부. 끝.

8. 사업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응모번호 제 2009 - 1호	
<p>가. 사업주체 : 이토건설(주) 대표 김시춘 (☎ 032-433-9500) 이토씨앤디(주) 대표 김시춘</p> <p>나.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대표 이봉희 (☎032-891-8111)</p> <p>다. 시공자 : (주)금호산업 대표 이연구 (☎ 02-6303-0114)</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30블록 1-5로트 ○ 대지면적 : 47,891㎡ ○ 연면적 : 128,720.9022㎡ ○ 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 10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600세대 ○ 공사기간 : 2009.10.15 ~ 2011.11.14(2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07.01 ○ 착공예정일 : 2009.10. <p>마.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270,009,990천원 ○ 대지비 : 115,352,192천원 ○ 총공사비 : 101,637,945천원(타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2.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 86,531,762천원 ○ 전기공사비 : 6,084,310천원 ○ 소방공사비 : 4,802,874천원 ○ 정보통신공사비 : 4,218,999천원 	<p>바. 복수예비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공사비 : 86,531,762,000원 ○감리예가기준: 2,030,208,200원 (건축공사비의 2.3462% 적용) 감리최저예비가격 : 1,908,396,812원 감리최고예비가격 : 2,022,062,456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08,396,812원 ② 1,916,534,278원 ③ 1,924,656,725원 ④ 1,932,772,538원 ⑤ 1,940,864,468원 ⑥ 1,948,974,354원 ⑦ 1,957,157,426원 ⑧ 1,965,363,279원 ⑨ 1,973,357,264원 ⑩ 1,981,476,891원 ⑪ 1,989,612,165원 ⑫ 1,997,735,637원 ⑬ 2,005,867,430원 ⑭ 2,013,984,127원 ⑮ 2,022,062,456원

※ 변경내용은 부분임.